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유 용 의원 대표발의)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60
------	------

2016. 12. 5.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2월 1일, 유용의원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일
-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유 용 의원)

-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함. 하지만 서울시의 현행 조례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 이에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비롯해 정비가 필요한 서울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자치법규 일괄개정의 의의

- 지방자치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의 수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이하 “시”)에는 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89건의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하지만,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사항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실제로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서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거나,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정비 형식으로 복수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몇 차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례 개정을 실시한 바 있음.

〈표〉 서울시 일괄조례 형식 조례 처리 현황

연번	발의일시	조례명	발의자	처리결과
1	2003. 2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2	2004.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시장	가결
3	2007. 1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4	2008. 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5	2008. 6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	의원	폐기
6	2009.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7	2009. 12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가결
8	2010.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9	2011. 6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철회
10	2014. 1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계류중
11	2015. 9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원	가결
12	2015.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원	가결

- 시에서도 2003년 이후 모두 12회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
-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본 조례안은 비교적 개정 내용이 단순하고 명료해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9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함.
- 일괄정비 형식의 조례안 처리는 입법방식의 효율성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법제처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개별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의안심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사소한 법령개정사항 등으로 그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빈도도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 이를”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향보고 사항”을 “동향보고”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대상되는”를 “대상이 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조 제1항 제5호”를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사항에 한한다”를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등의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제2조 제5호 아목”을 “제2조제5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8조제6항에따라”를 “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 중 “심사종료후 1월”을 “심사종료 후 1개월”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진술”을 “진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7명의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등을위원회”를 “등을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 제5조에 의한”을 “② 제5조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1명, 부의장1명”을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의”를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행정과장”을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 행정과장”을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국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와 집행기관 등”을 ““시와 집행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라고”를 ““시장”이라고”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시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위임에 관하여는”을 “위임은”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한다.이 경우”를 “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44조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0조 중 “허가한다.다만”을 “허가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4조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한다.다만”을 “행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실시한다.다만”을 “실시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변상시킨다.다만”을 “변상시킨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징수한다.다만”을 “징수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아니한다.다만”을 “아니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본 조례”을 “이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 조례”을 “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조달 시 본 조례”을 “공공조달 시 이 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용자간”을 “이용자 간”으로, “주고 받을”을 “주고받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같은조제5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으로, “계재로써”를 “계재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이란 서울특별시”를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로, “규격 비치, 보관 기타”를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장은”을 “장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을 “그 밖의 기관의 공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기타”를 “등”으로, “사무”를 “업무”로 한다.

제4조 중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을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명시 하여야”를 “명시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 제8조 규정에의한”을 “따라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자격기준에 관하여”를 “제110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급이상”을 “1급 이상”으로,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급이상”을 “2급 이상”으로, “6년이상”을 “6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9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를 “제1항에 따라 헌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사관으로 하여금 추천된”을 “감사위원회가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감사관이”를 “감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7.“고정비용””을 “7. “고정비용””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1항각호”를 “제2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3인 이상 21인”을 “13명 이상 21명”으로, “각호의 자중”을 “각 호의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인”을 “1명”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할하되”를 “총괄하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의”를 “과반수”로, “이상의 찬성”을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위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48시간안”을 “48시간 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하다. 다만,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를 “아니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로, “반환한다”를 “신고자에게 반환한다”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에게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은 전항의”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항과 전전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장 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서울국제경제자문단”으로,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 자문단은”을 “자문단은”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의 의장과 3인이내”를 “1명의 의장과 3명 이내”로, “4인중 최소 3인은 다음 각호”를 “4명 중 최소 3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정기회”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사항이외”를 “사항 이외”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중”을 “각 호의 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을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3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바에 의하여”을 “바에 따라”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8조 제1항 제8호”를 “제1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 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7 그 밖에”를 “7.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4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쟁송사건에 있어”를 “쟁송사건의 경우”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법률검토를 요하는”을 “법률검토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처리함에 있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 시스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예산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2의 규정”을 “제37조의2”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허가, 인가, 등록등”을 “허가, 인가, 등록 등”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범위안에서 교부한다”를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을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 하여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을”을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행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행기관에게”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를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에게”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을 “지역개발사업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물에 대한”을 “시설물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를 “차상위계층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운휴일”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를 “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태그인증시”를 “전자태그 인증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 태그”를 “전자태그”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를 “이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제2조 제1항 제4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축하는데”를 “구축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현하는데”를 “구현하는 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회복하는데”를 “회복하는 데”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를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법”이라 한다.”를 ““특별법”이라 한다”로, “전지역”을 “전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온”을 “평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정온”을 “평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온”을 각각 “평온”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저감시키기”를 “줄이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를 “반영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온”을 “평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발생되”를 “발생하”로,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등으로부터”를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 하도록”을 “확보 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문을 요청하는”을 “자문하는”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이 경우”를 “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촉위원중”을 “위촉위원 중”으로, “1인과”를 “1명과”로, “1인으로”를 “1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과 감사 2인”을 “4명과 감사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위원중”을 “위촉위원 중”으로, “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에 따른”으로, “된다”를 “점입한다”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월말까지”를 “7월 말까지”로, “1월말”을 “1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월말”을 “3월 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 회계연도내”를 “해당 회계연도 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품목외”를 “대상품목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행할수”를 “시행할 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보조 할”을 “범위에서 보조할”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제15조제2항”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및 제 15조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 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말한다.이하”를 각각 “말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나”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 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이해관계가”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

5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중)”을 “중(種)”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대체 할”을 “대체할”로, “강구하도록”을 “마련하도록”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빛등등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빛등등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세빛등등섬”을 “세빛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세빛등등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3조 중 “세빛등등섬”을 “세빛섬”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빛등등섬”을 “세빛섬”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빛등등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태하는”을 “게을리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빛등등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명 하며”를 “지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로, “위촉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하여야”를 “해촉하여야”로 한다.

제17조 중 “세빛등등섬”을 “세빛섬”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 한”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받거나”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을 “지정한 자에게”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를 “(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조화여부”를 “조화 여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이 경우”를 “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시설에 대한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를 “시설의 대관신청을 승인하는 데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을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한다.이를”을 “한다. 이를”으로 한다.

제15조 중 “세입·세출의”를 “세입·세출”로, “3월말”을 “3월 말”로 한다.

제16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②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④그 밖에”를 “④ 그 밖에”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며,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의 규정을”을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종합자료관장”을 “서울도서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각각 “과반수의”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시설에 한 하여”를 “시설만”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 중 “50%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대한민국의”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국가보훈 관계 법령””을 “3.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성하는데”를 “조성하는 데”로 한다.

제4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를 “수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훈관련”을 “보훈 관련”으로, “때에 시 지역출신”을 “경우에 시 지역 출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관련”을 “보훈 관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로,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대하여 필요”를 “필요”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통 받는”을 “고통받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채무조정제도에 대한”을 “채무조정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지수급제도에 대한”을 “복지수급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다음연도 2월말”을 “다음 연도 2월 말”로 한다.

제7조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0조(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유족에 대하여”를 “유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망시”를 “사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립、운영하는데”를 “설립、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등으로부터”를 “등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천된”을 “추천한”으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위탁하는”을 “위탁할”로, “법령의 규정”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하여 재단”을 “재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1개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16조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받거나”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제30조의4 의 규정”을 “제30조의4”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용하는데”를 “운용하는 데”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노인관련”을 각각 “노인 관련”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문제”를 “장애인 문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자활근로 참가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률의 규정”을 “법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을 “기금에서 대여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외”를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둔다.다만”을 “둔다, 다만”으로 하고,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사무에 대해서”를 “사무”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성한다.다만”을 “구성한다. 다만”으로 하고,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호선으로 선임된”을 “호선된”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등”을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안에서”를 “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위한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는데”를 “추진하는 데”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 운영하는데”를 “설치, 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위탁하는데”를 “위탁하는 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 다만”을 “준용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 중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을 “위탁관계를 취소하는 등의”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을 “사회복지시설의”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시”를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을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으로 하며, 제5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있어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간”을 각각 “지역 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여 선출하되”를 “호선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7호”를 “제14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직에”를 “업무에”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해당사업”을 각각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에 해당사업”을 “그 밖에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에서의 협력을”을 “지역 간 격차해소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신한데”를 “헌신한 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을 “참전유공자의”로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제25조제2항”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인구 수에 대한”을 “인구수에서”로, “인구 수의”를 “인구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3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2항 규정”을 “제25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을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자치구에 대하여”를 “자치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인해 국가부담비율”을 “국가부담비율”로, “부담하여 변제하여야”를 “변제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재정여건에 관한”을 “재정여건 관련”으로, “사항에 대하여

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을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시행규칙 제41조”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재가급여”를 “그 밖의 재가급여”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재가급여에 대하여”를 “재가급여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하여 이의”를 “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으로 하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로,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로, “수급자에 대하여”를 “수급자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시장”을 “③ 시장”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감독할 수 있으며”를 “감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을 ““장년층(長年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지원 할”을 “수탁기관에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를 “위탁사무의 처리에”로, “보고하게 하거나”를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로, “검사 할”을 “검사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장년층”을 “위하여 장년층”으로 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를 향상시키도록”을 “복지 향상을 위해”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숙인 등의 현황”을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간으로부터”를 “민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대한 자문을”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활사업에 대한”을 “자활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실시하는데”를 “실시하는 데”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를 “그 밖의 자활사업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이란”을 ““중증장애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립생활”이란”을 ““자립생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라”를 ““활동지원급여”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체험홈”을 ““체험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가정”으로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5조(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으로부터”를 “시장에게”로, “수화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를 “수화통역센터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여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의 등록”을 “지역에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근 지역 등록”을 “인근 지역에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소당”을 “개소 당”으로,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을 “1명과 수화통역사 4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7조 중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27조(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에 따라”를 “제39조 및”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시행규칙 제46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28조(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5조 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우려되는”을 “우려될”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29조(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급권자에 대하여”를 “수급권자에게”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으로부터”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분기”를 “매분기가”로, “의료 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을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30조(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관계인으로부터”를 “그 밖의 관계인에게”로, “한후”를 “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1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 연도”를 “회계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2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를 “시가”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33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법률 제48조의 2”를 “법 제48조의2”로, “제48조에”를 “법 제4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5조 제1항 제1호”를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4조(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35조(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를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로 한다.

**제136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0호”로, “안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137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의2”를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38조(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원 사업”을 각각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홍보 사업”을 “홍보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 제3호”를 “제9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센터장으로 하여금”을 “센터장에게”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9조(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5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센터장으로 하여금”을 “센터장에게”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140조(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원에 있어서”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경우”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양육지원수당”을 “양육지원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로 한다.

**제14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42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3조(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4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5조(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현장적응력”을 “현장 적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라”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6조(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7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제11조제6항에 해당함”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평가하고, 시민”을 “평가하고, 시민”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148조(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9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받아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50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1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이후”를 “사용 이후”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에 관하여는”을 “지원 은”으로,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152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및”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53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적정성확인”을 각각 “적정성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정성 확인”을 “적정성 확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제89조제2항”을 “영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염화물함량”을 “염화물 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54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실소요비용”을 “실 소요비용”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5조(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6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바를”을 “바에”로 한다.

**제157조(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상황에”를 “긴급상황에서”로,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3호에 따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같은 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8조(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9조(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0조(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1조(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2조(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① “시민수상구조대””을 “1. “시민수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 “물놀이장소””를 “2. “물놀이장소””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0조2의 규정”을 “제10조2”로 한다.

제9조 중 “보전 하기”를 “보전하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163조(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독거중증장애인등”을 “독거중증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 되어야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를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4조(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65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시에너지조례”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매회계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때에,”를 “경우에,”로,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66조(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중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때에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



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②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③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함에 있어”를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를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7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방법에 의한”을 “각 호의 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시기”를 “지급 시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비:중개대상물”을 “실비: 중개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비:계약금”을 “실비: 계약금”으로 한다.

**제169조(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4호 중 “심의 에”를 “심의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7인”을 “7명”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최소화하여야”를 “최소화 하여야”로 한다.

**제170조(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관리하는데”를 “개선·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거쳐야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신청 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1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3조의 규정”을 “영 제23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2조(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이라한다) 제58조의 규정”을 ““법”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9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법 제59조제3항제6호”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3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60일전부터 7일전”을 “60일 전부터 7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범위이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범위 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75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을 “2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6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77조(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8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30조의4의 규정”을 “제30조의4”로 한다.

**제179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다만”을 “적용한다. 다만”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80조(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거기본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13조”를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181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제고함”을 “활성화 제고를”로 한다.

**제182조(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운영에 관하여는”을 “운영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임명당시”를 “임명 당시”로, “자이였음이 판명된”을 “자로 판명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7항 본문 중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을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행함에 있어”를 “대행할 때”로, “제3자로”를 “제3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을 “비용부담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를 “예산편성지침대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있는”을 “있을”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체결함에 있어서”를 “체결할 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영제63조 에”를 “영 제6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83조(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등 관계규정을”을 “법 시행령 제64조를”로 한다.

**제184조(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185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을 “운영은 제4조제4항”으로,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한다.

**제186조(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을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대상사업”을 “수립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차입(차입)”을 “차입(借入)”로 한다.

제11조 중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이월)한다”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로 한다.

**제187조(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로 한다.

제39조 후단 중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로 한다.

**제188조(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버스관리과장, 서기는 버스관리과”를 “버스정책과장, 서기는 버스정책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범위 안에서 수당·기타”를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89조(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한다.

**제190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91조(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교통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제36조제1항”으로,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드는”을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 에”를 “제1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을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를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를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2조 제1항”을 “제22조”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3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94조(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95조(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원회”를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